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지부교섭 속보

4호

2022.05.13(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4차 지부교섭_질의응답② 퇴직년도 발생한 연차수당, 지부 재정자립기금]

질의응답은 끝났다! 사측 제시안 마련하라!

4차 교섭, 두 번째 질의응답 진행

5월 12일(목) 한국JCC에서 4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이 날 교섭은 두 번째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측 교섭위원은 퇴직년도 연차수당과 지부 재정자립기금에 대해 질문했다. 박종우 지부장은 “오늘 질의응답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겠다. 다음 교섭에서는 사측 제시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요구한 것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노동한 대가로 발생한다. 정년퇴직 마지막 해까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정년퇴직 다음해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퇴직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차기 교섭에는 사측 제시안 마련해야

이번 교섭으로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났다. 사측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성실한 제시안이 제출돼야 한다.

5월 10일 열린 5차 중앙교섭에서 첫 제시안이 나왔다.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중앙교섭도 제시안이 나온만큼 지부교섭도 시간 지체하지 말고 차기 교섭에서는 제시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5/12(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한국JCC 현장순회



4차 교섭 속기록

퇴직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사 :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국 상해시를 봉쇄하다 보니 물류문제로 수출 자체가 안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경제적 환경은 어렵지만 노사가 대화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자.

노 : 질의응답 두 번째 시간이다. 충실히 답변할테니 차기에는 제시안 제출해주면 좋겠다.

사 : 퇴직년도 연차수당은 관례 유지가 목적인다고 했는데, 지급 안하던 회사는 부담이 크다.

노 : 지부교섭 사업장 중 3개사가 지급하고 있고 대각선교섭 사업장도 꽤 있다. 기존에 지급하던 사업장을 포함해서 설명하다보니 관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미지급하는 사업장은 올해 교섭 결과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사 : 1년이상 계속 근무는 비정규직 포함인가?

노 : 비정규직 포함한다. 근데 교섭은 조합원 대상이기 때문에 조합원 범위라고 보면 된다.

사 : 평균임금 산입 단서 조항 설명해달라.

노 : 정년 마지막해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와 그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라는 요구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와 퇴직년도에 정산한 연차수당인데 거기에 마지막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포함해서 2번 산입하자는 요구다.

사 : 재정자립기금에 대해 설명해달라.

노 : 지부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지회를 포함한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다. 지부 간부도 지회별로 전임자를 파견했는데, 법적 규제도 생기고 회

사들도 전임자 파견을 어려워하면서 사업장이 기금을 부담하고 지부가 간부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회사들이 전임자 파견하기 어려워서 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 : 재정자립기금은 타 지부도 하고 있나?

노 :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다.

사 : 금액을 조합원 수로 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각 사별로 일률적으로 걷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5,000원은 어떻게 책정됐나?

노 :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면 더 비합리적이다. 각 사별 상황을 일일이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 수로 하는게 합리적이다. 기존에 지부교섭 참여 사업장별로 나눈 금액이 대략 5,000원이었다. 그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사 :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부 조합원 많이 증가한 걸로 안다. 지부 기금도 사정이 좋아졌을 것으로 본다. 사업장 기준을 통일시키려는 것이 취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금액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인지?

노 : 조합원이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지부 간부도 더 필요해졌다. 대각선교섭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기준을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사 : 조합비를 올리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나?

노 : 노조는 통상임금 1%로 조합비를 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올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 지회 따로 지부 따로가 아니다. 지부와 지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내용이다.